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8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 박희승 · 민병덕 · 김정호

윤준병 · 김준혁 · 서영교

정준호 • 박상혁 • 백혜련

안호영 · 김영호 · 강유정

전진숙 · 김한규 · 정진욱

이기헌 · 소병훈 의원

(17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·장애인·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취업을 제한하고 있음.

2023년 「노인복지법」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가 노인학대 범 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.

이는 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,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·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,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

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·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	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
취업제한 등) ① 법원은 장애	취업제한 등) ①
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	
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	
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	
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	
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	
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	
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	
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	
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	
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	
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	
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	
유예 • 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	
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	
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	
(이하 "취업제한기간"이라 한	
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	
시설 또는 기관(이하 "장애인	
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	
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	
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	

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 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 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 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 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(생략)
- 2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의 노 인복지시설

3. ~ 10. (생략)

② ~ ③ (생 략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·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
- 3. ~ 10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